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요 방송사업자 대표자 결격사유 신설 등 〉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49호)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51호)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5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검토의견	4
1. 방송사업자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자격요건 규정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7. 11.

다. 회 부 일 : 2025.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공영성·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공영성·중립성을 확보하여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7. 11.

다. 회 부 일 : 2025.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공영성·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공영성·중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1항 신설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7. 11.

다. 회 부 일 : 2025.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불거져 왔음.

그러나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방송의 경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 의무와 공정성, 공익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방송사업자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자격요건 규정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PP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KBS·EBS·방문진 이사와 KBS·EBS·MBC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3조(결격사유)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단서 신설> 1. ~ 7. (생략) <신설> <신설>	제13조(결격사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제3항제10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분야의-----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 그 밖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④ ~ ⑨ (생 략) 第50條(執行機關) ① (생 략) ② 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第50條(執行機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 -----. ③ ~ ⑥ (현행과 같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생 략)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③·④ (생 략)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이사회는 <u>방송통신위원회가</u>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 ⑨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 그 밖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③ ~ ⑨ (현행과 같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 ① ~ ③ (생략)	제6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u>방송에</u>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④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에</u> ----- -----.
<신설>	1. <u>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 그 밖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신설>	2. <u>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신설>	3. <u>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신설>	4.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u>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신설>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u>진흥회는 제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하여야 한다.</u>
① <u>진흥회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회는</u>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5호에</u>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제2항제5호에</u> ----- -----.

나. 검토 의견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PP의 대표자·편성책임자 결격사유 신설

-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없고, 제13조제3항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함.

<현행법상 방송사업자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외국인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운영과 내용 편성을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외국인 등), 법적 행위능력 및 경제적 신용도(미성년자, 파산자 등), 방송 관련법 및 중대법

죄이력(방송법,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회적 책임성(보안관찰, 치료감호 등)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전문PP의 사장 및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해서 당원신분, 취임공직, 대통령선거의 자문 및 고문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신분 3년 미경과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주요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KBS, EBS의 이사·사장 및 부사장 등 주요 간부, 방문진 임원 및 MBC 사장의 결격사유와 유사함.¹⁾

<개정안의 결격사유>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동 개정안의 적용범위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차이점은 공영 3사의 이사진 및 사장단의 경우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임.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전문편성PP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	
지 상 파 방 송 사 업 자	종합편성 (33개사)	- 중앙지상파방송(3)	KBS, MBC, SBS	
		- 지역MBC(16)	부산MBC, 대구MBC, 광주MBC, 대전MBC, 전주MBC, 춘천MBC, MBC충북, 제주MBC, 울산MBC, 강원영동MBC, 경남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포항MBC	
		- 지역민방(10)	부산방송(KNN), 대구방송(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울산방송(UBC), 전주방송(JTV), 청주방송(CJB), 제주방송(JIBS), 강원민방(G1), OBS경인TV(OBS)	
		- 라디오방송(3)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티비에스(tbs-eFM)	
		- 지상파DMB(1)	YTNDMB	
		보도 전문편성 (1개사)	- 라디오방송(1)	YTN라디오
	전문편성 (10개사)		- 교육전문(1)	EBS
		- 음악방송(2)	경인방송, 국악방송	
		- 종교방송(5)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 영어(1)	국제방송교류재단	
		- 교통(1)	도로교통공단	
	소계			44개 사
	종합편성PP(4개사)			JTBC, TV조선, 채널A, MBN
보도전문편성PP(2개사)			YTN, 연합뉴스TV	
계			50개 사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전문편성PP의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영방송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나 정치적 중립성 등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는 방송사업자의 반대 의견이 있음.

- JTBC는 결격사유 신설은 방송사업자 인사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고, 오히려 방송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은 기존 내부통제와 외부감독 등으로 충분히 확보가능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 채널A는 과도한 인사권 제한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고, 방송사의 개별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는 오히려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과 충돌되며, 방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 판단은 방송심의, 재승인 심사, 편성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임.
- TV조선은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수준을 민영방송사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으로 민영방송사업자별 자율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은 방송심의, 재승인 등 제도를 통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임.
- MBN은 현제도 정치적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인사권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 연합뉴스TV는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으로 그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주주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상법 등과도 상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내부기구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임.

- 이를 종합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함께, 이는 민간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고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방송사업자들의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KBS, EBS, 방문진, MBC의 사장, 임원 등 자격요건 신설

- 현행 「방송법」은 KBS의 이사 및 집행기관(사장, 부사장, 본부장 및 감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EBS의 이사 및 임원(사장, 부사장, 감사),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문진 임원(이사 및 감사)과 MBC 사장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KBS, EBS, MBC 관련 현행법 상 결격사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개정안은 이어나 사장 등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야 KBS·EBS·방문진 이어나 KBS·EBS·MBC 사장 등에 임명될 수 있음.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자격요건>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 그 밖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개정안은 방송·언론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어나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의적 임명을 방지하고 선임의 전문성·투명성·정당성에 대한 제고가 가능한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KBS, EBS, 방문진 이사 수를 증원하는 동시에 이사 추천단체를 다양화하고, KBS, EBS, MBC 사장임명에 있어서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자격요건을 한정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유입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KBS**는 방송의 다양성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역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한정된 분야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만으로는 다양한 직역이나 지역사회의 민의를 반영할 수 없으며 사회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EBS**는 ‘교육방송’이라는 책무의 차별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송과 언론 외에 ‘교육’ 관련 자격요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JTBC**는 방송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자의 유입이 필요한데, 이사의 자격요건을 개정안과 같이 엄격히 제한할 경우 조직 경직화 및 의사결정의 폐쇄성, 인적 다양성 저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송3법’의 방향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6